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의견

---

제안연월일 : 2017.11.27

## 1. 주 문

2017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아래 제안이유와 같이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 2. 제안이유

### 가. 요구사유

2017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관련 증인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나. 과태료 부과 현황 「별첨1」

## 3. 참고사항

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현황

## □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참자 현황

연번	성명	행위시 직책	출석요구일시	비고
1	김 동 균 (41.12.20)	한흥학원 이사장	'17. 11. 07(화) 10:00	서울미술고 학교운영 비리 관련
2	이 돈 환 (42. 1.14)	한흥학원 이사	'17. 11. 07(화) 10:00	
3	김 정 수 (44.11.11)	서울미술고 교장	'17. 11. 07(화) 10:00	
4	이 선 경 (72.8.25)	서울미술고 교감	'17. 11. 07(화) 10:00	

## □ 불출석 사유에 따른 과태료 부과현황

연번	성명	불출석 사유	과태료 부과사유 및 결정액
1	김 동 균 (41.12.20)	○ 현재 이사장직을 사임(2017. 9. 21)한 상태이고 고령으로 병 치료 중	○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른 출석요구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 위원회 의결로 500만원 부과
2	이 돈 환 (42. 1.14)	○ 현재 고령으로 병 치료 중 (담담암, 전립선암선종)	○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른 출석요구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 위원회 의결로 500만원 부과
3	김 정 수 (44.11.11)	○ 고령으로 병 치료 중(난청, 천막상 뇌양성종양)	○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른 출석요구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 위원회 의결로 500만원 부과
4	이 선 경 (72.8.25)	○ 현재 임신 25주 중이고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 치료 중 (상세불명의 산모고혈압)	○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른 출석요구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 위원회 의결로 500만원 부과

## 증인별 불출석 사유 및 과태료 부과 판단사항

행위시 직책	증인	불출석 사유	판단사항
한홍학원 이사장	김 동 균 (41.12.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7. 11. 2자 진단서 제출</li> <li>- 2012. 2월 악성종양으로 수술후 복통, 소화불량, 속쓰림 등으로 약물치료 중으로 최근 1달전부터 증상 악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통, 소화불량, 속쓰림 등이 의회 감사장에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인지 상관관계 불분명</li> </ul>
한홍학원 이사	이 돈 환 (42. 1.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7. 9. 14자 진단서 2건 제출</li> <li>※ 담낭암, 담석 수술일자(2017. 9. 6)</li> <li>○ 2017. 11. 2자 진단서 제출</li> <li>- 전립선 암 진단을 받았으며 추후 외래 통해 추적 관찰 중</li> <li>※ 비뇨기과 입퇴원일 (2015. 4. 10 ~ 2015. 4. 1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인 질병 중 담낭암, 담석으로 인한 수술 후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없으며,</li> <li>○ 전립선암 진단(2015. 4. 11)후,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없어 현재 건강상태와 출석사유간에 상관관계 불분명</li> </ul>
서울미술고 교장	김 정 수 (44.11.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7. 10. 17자 진단서 제출</li> <li>- 난청, 천막상 뇌 양성종양</li> <li>- 타병원에서 시행한 MRI상 뇌종양 의심 소견 보여 2015. 1. 21 신경외과 외래에 처음 내원</li> <li>- 2015. 1. 21 이후 주기적인 뇌 MRI 촬영으로 추적 관찰 중</li> <li>- 증상 악화시 개두술 통한 뇌종양 제거술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뇌종양 의심 소견(2015. 1. 21 이전)으로 이후 주기적인 관찰이 요구된다는 진단이 의회 감사장에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인지 상관관계 불분명</li> </ul>
서울미술고 교감	이 선 경 (72.8.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7. 10. 21자 진단서 제출</li> <li>- 상세불명의 산모고혈압</li> <li>- 협압상승시 임신 중독증, 태반조기박리, 태아 저체중 등 합병증 발생 위험 높아 안정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모고혈압이 의회 감사장에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인지 상관관계 불분명</li> </ul>

##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도의회는 그 감사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④ 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되,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과태료부과)

① 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과태료는 의장의 통보에 의하여 시장이 부과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